

문서번호	BSKS-2-1-04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6

1986.03.01.제정 1992.03.01.개정 2000.03.02.개정 2001.03.02.개정 2004.03.02.개정 2009.03.02.개정 2014.02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7.0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판부서 : 산학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명칭) 본 회의는 부산경상대학교 총학생회(이하 "본회"라 한다.)라 칭한다.
- 제2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학훈에 입각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자치활동의 실천구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회원)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휴학한 자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- 제4조(권리,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,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제5조 삭제

- **제6조(효력정지)** 본 회는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 된다.
- 제7조(기능) 본 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학습, 예술, 체육활동
 - 2. 동아리 활동
 - 3. 각종 봉사활동
 - 4.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자치활동
 - 5.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





문서번호	BSKS-2-1-04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6

제 2 장 기구, 임원, 직무

- 제8조(임원) ① 본회의 임원은 총학생회장, 부총학생회장, 각부서장, 각과 학생회장, 각반 학생 회장으로 한다.
 - ② 총학생회 임원은 본 대학 임원 승인 규정 제2조 각 호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, 간부임기 중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.
 - ③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회계연도와 같다.
- 제9조(부서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며 사무를 관장한다.
 - 1. 총 무 부 : 본회 제반사업의 서무, 문서, 회계 및 기타사항을 관장한다.
 - 2. 기 획 부 : 본회 학술, 문화 및 제반사업에 대한 기획을 담당한다.
 - 3. 성 야 부 : 2부 학생들의 학·예술 및 체육, 친목활동 등의 행사를 담당한다.
 - 4. 홍 보 부 : 본회 대내외에 관한 섭외, 홍보활동 및 교양, 취미, 동아리활동 등 학생의 친목도모를 담당한다.
 - 5. 체 육 부 : 학생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.
 - 6. 봉 사 부 : 학생의 자주적 자질의 함양과 사회계몽사업 및 봉사활동을 담당한다.<개 정 2019.07.16.>
 - 7. 여학생부 : 여학생 활동 및 친목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.
- 제10조(직무 및 선출) ① 총학생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.
 - ② 부총학생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정·부총학생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정·부총학생회장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, 각 부 서장은 총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일괄 인준하고 총장이 승인한다.
- 제11조(구성)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과 학생회장과 각반 학생회장 및 집행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제12조(기능)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
 - 2. 예산, 결산의 심의 및 승인
 - 3.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
 - 4. 정·부총학생회장 불신임 결의
 - 5. 학교에 건의할 사항
 - 6. 집행부 부서장의 일괄 인준 및 해임 결의
 - 7.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
 - 8. 기타 필요한 사항



문서번호	BSKS-2-1-04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6

- 제13조(회의)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3일전까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 대의원 1/3이상 또는 학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 -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- 제14조(정·부총학생회장 불신임 결의) ① 대의원회는 정·부총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.
 - ②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1/2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전 2항에 의해 불신임 결의가 된 자는 즉시 사임하고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단, 그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치 않고 집행부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5조(구성) ①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본회의 정·부총학생회장 및 각 부 서장으로 구성된다.
 - ②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하에 차장을 들 수 있다.
- 제16조(기능)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
 - 2. 사업계획의 작성 및 사업시행
 - 3. 예산편성, 집행 및 결산보고
 - 4. 학교와 협의할 사항
 - 5. 기타 중요한 의안
 - 6. 특별한 사정으로 대의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.
- 제17조(회의) ① 집행위원회는 월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의 요구 및 대의원회의 요구 또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 - ②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이 결정한다.

제 3 장 재 정

- 제18조(회비) ①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 전 항의 회비는 학생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 - ③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처리는 학교의 지도 감독 하에 집행한다.





문서번호	BSKS-2-1-04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6

- 제19조(예산편성) ①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30일 이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 - ② 대의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통과하여야 한다.
 - ③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은 학생취업지도위 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.
 - ④ 예산 성립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단, 추경예산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된 예산의 내용은 학보에 공고한다.
- 제20조(결산 및 감사) ① 총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90일 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며 대의원회의 승인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② 집행위원회는 대의원회 및 학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.
 - ③ 중간보고 및 결산에 관계된 사항은 매학기 학보에 공고한다.

제21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.

제 4 장 학생지도위원회

- 제22조(구성) ① 본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.
 -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5인 이내로 한다.
 - ③ 위원장은 본 대학총장, 부위원장은 산학처장이 되며, 지도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위촉한다. <개정 2020.09.25.>
 - ④ 학생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23조(기능)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- 2.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사항
 - 3.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
 - 4. 예산 편성 및 결산, 감사에 관한 사항
 - 5. 학생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
 - 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5 장 개정 및 시행 세칙



문서번호	BSKS-2-1-04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6

- 제24조(회칙개정) ①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지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.
 - ② 회칙 개정안은 대의원에서 재적의원 2/3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되며, 학생·취업지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제25조(시행세칙)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심의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
문서번호	BSKS-2-1-04
제정일자	1986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6/6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7.03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교학처』에서 『산학취업처』로 이관하고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산학취업처』를 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